

GCS 장학규정

1. GCS 장학위원회

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과 장학생 선정 및 인원 배정 등 장학 업무를 심의합니다. 본교의 모든 장학생 선발은 부모 신청에 의해 교무회의에서 심의, 진행합니다.

2. 장학금 종류 및 내용

종류	기호	대상 및 선발기준	유효기한	혜택	제출서류
성적우수	SFE	- 전 학기 전 과목(평점) A이상 - ACT 32점 - SAT 2200점	한 학기	수업료의 20%	성적증명서 교사추천서
어학우수		- TOEFL(IBT) 110점이상, - IELTS 7점이상	1회	수업료의 20%	공인영어성적
교직원자녀	GFM	- 본교 직원의 직계자녀	근무기간	수업료의 50%	가족관계증명서
강사자녀	GFM	- 본교 강사의 직계자녀	근무기간	수업료의 20%	가족관계증명서
목회자자녀	GMN	- 목회자 직계자녀	재학 기간	수업료의 50%	교단소속증명서, 재직증명서, 총회보고용 교세통계표
선교사자녀	GMS	- 선교사 직계자녀	재학 기간	수업료의 50%	교단소속증명서, 재직증명서, 총회보고용 교세통계표
형제장학금	GS	- 형제자매 재학 학생 중 저학년 학생	재학 기간	수업료의 20%	가족관계증명서
다문화가정	GMF	- 다문화(부모)가정의 자녀	재학 기간	수업료의 50%	가족관계증명서
은혜교회	GCM	- 은혜교회 6개월 이상 재적출석 교인	재학 기간	수업료의 50%	재적증명서
한부모가정	SPC	- 한부모 가정의 자녀	재학 기간	수업료의 50%	가족관계증명서
세 형제 이상	GTS	- 세 형제 재학 학생 중 셋째 학생	재학 기간	수업료	가족관계증명서
기탁자지정	GDA	- 기부기관, 기탁자가 특정학생 지정	후원 기간	지정액	기부기관 및 기탁자 확인서

3. 장학금 심의 절차

신청 → 서류심사 → 통보

4. 장학위원회 구성



5. 장학규정 / 환급 및 취소

- ① 다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자격이 정지된다.
 - * 장학금 수혜자 중 입학 1년(2학기) 후, 새 학기부터 모든 과목(평점) 성적이 B미만 경우
 - * 학교생활 중 Tally(벌점)가 10개 이상일 경우(기간 : 한 학기 평가기준)
 - * 학생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(흡연, 폭력, 절도, 정학처분 등)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장학금은 반환해야 한다.
- ② 다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 자격이 변경된다.
 - * 학년 조정(초→중/중→고)시 수업료 변동으로 인하여 장학금 혜택이 변경된다.
 - * 형제자 재학 시 1인 졸업, 휴학, 자퇴 시 남은 형제자는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다.